

## 경력환산 기준표(제3조제1호 관련)

| 구분  | 환산율  | 경력 내용                                                                                                                                                                                                                                                            |
|-----|------|------------------------------------------------------------------------------------------------------------------------------------------------------------------------------------------------------------------------------------------------------------------|
| 제1류 | 100%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임기제공무원」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br>2.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전임강사, 정원 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 포함)<br>3.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무관후보생 경력 제외)<br>4. 박사학위 취득기간(3년까지)<br>5. 국립생태원 정규직 재직 경력                                                    |
| 제2류 | 80%  | 1.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국립생태원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력<br>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br>3. 사립학교에서 정규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br>4.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br>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체에서 에서 정규직원으로 재직한 경력 |
| 제3류 | 60%  | 1. 제1류 또는 제2류에 규정되지 않은 실무 경력                                                                                                                                                                                                                                     |

- 비고: 1. 학력 또는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하며, 중복된 근무지의 경력(학력)기간은 분할하여 환산하지 아니한다.
2. 각종 경력환산에서 같은 환산요율을 적용받는 경력은 각각의 기간을 합산한 후 월 단위 이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력 산출시 월 단위 기준은 30일로 한다.
3. 일자가 확실하지 않은 경력기간의 산정은 해당 월의 15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4. 근무기업 또는 단체의 도산·해체 등 제반사유로 서류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은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5. 제3류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 등의 경력은 경력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채용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술사 상당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의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전문자격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서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경력기간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7. 외국의 기관에서 학위취득 및 근무경력은 국내기관의 사례(국공립 여부 등)에 따라 적용한다.
8. 제2류2항의 경력환산 시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명시된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준용한다.
9. 제1류4항의 박사학위 인정은 채용시점의 박사학위취득자로 한한다.
10. 전근무지 경력사항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검증하며 검증되지 않는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무지별 4대보험 해지일은 경력환산에서 제외한다.
11. 그 밖에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